

# 공·병결 운영 지침 안내

## I. 주요 개선사항

구분	현재(~을)	변경(~으로)
병결	1일 결석 및 입원 (국·공립병원 진단서)	<b>1일 결석 및 입원</b> <b>(개인병원 진료확인서 포함)</b> * 10일 이내 전산 신청
생리 공결	교수 재량	<b>사유 발생일 내 전산 신청</b> * 사유 발생 이후 신청 불가 * 월 1회, 최소 20일 이후 사용

## II. 공·병결 운영 지침

### 1. 신청 시기 및 방법

- 가. 결석사유 발생 전후 1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신청 시기를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 입원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나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은 월 1회(1일만 적용), 생리공결일자가 전월 기준 20일을 초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신청하여야 한다. 시험기간의 결시는 인정하지 않는다.

### 2. 출석 인정

인정사유	인정기간 (공휴일포함)	증빙서류
59조 1항 1호 <b>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</b>	3~6일	- 사망진단서 - 가족관계증명서
59조 1항 2호 병사관계(징계검사)	1~3일	- 병역 관련 증빙서류
59조 1항 3호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참가	해당기간	- 관련기관 요청 공문
59조 1항 4호 학부(과) 졸업여행 등	해당기간	- 결재 공문(총장 승인) * 학생처 운영지침에 의거 인정
59조 1항 5호 본인의 결혼	5일	- 혼인관계증명서
59조 1항 7호 조기 취업	해당기간	* 별도의 운영지침에 의거 인정
59조 1항 8호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-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대회 및 행사 등 -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	해당기간 해당기간	* 총장이 승인한 공문 - 월 1회(1일만 적용)
59조 2항 병결로 인한 결석 - 1일 결석 - 입원	해당기간 해당기간	* 개인병원 이상 -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- 입퇴원확인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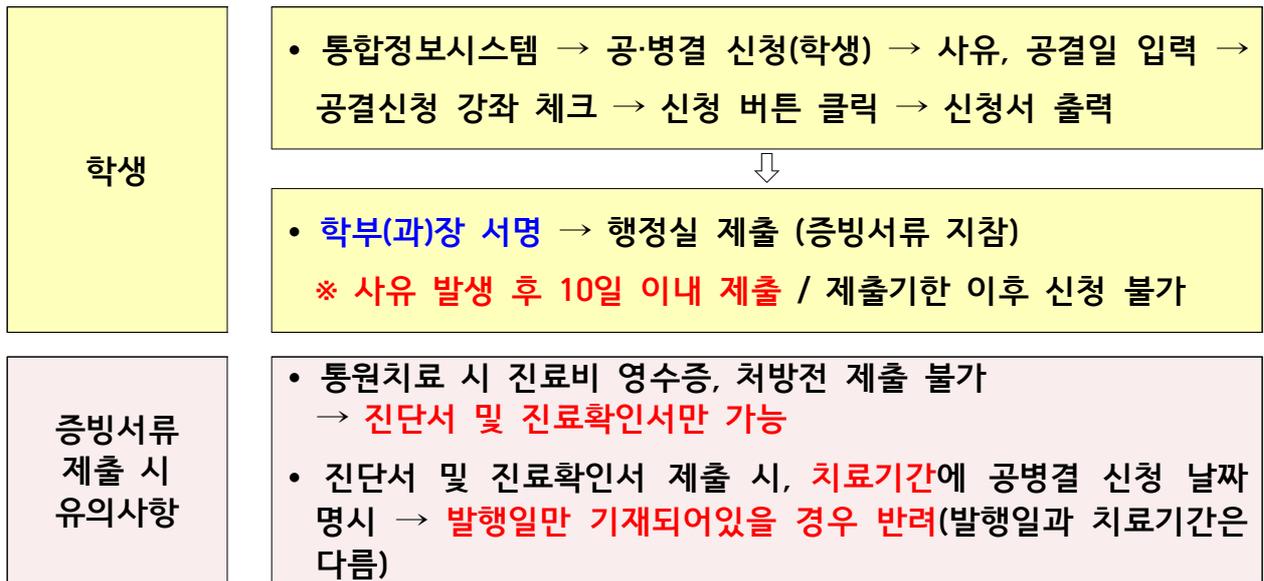
⇒ 직계존비속과 그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부모 6일 / 자녀 5일 / 조부모, 형제자매 3일까지 인정

### #. 공결 및 병결에 대한 출석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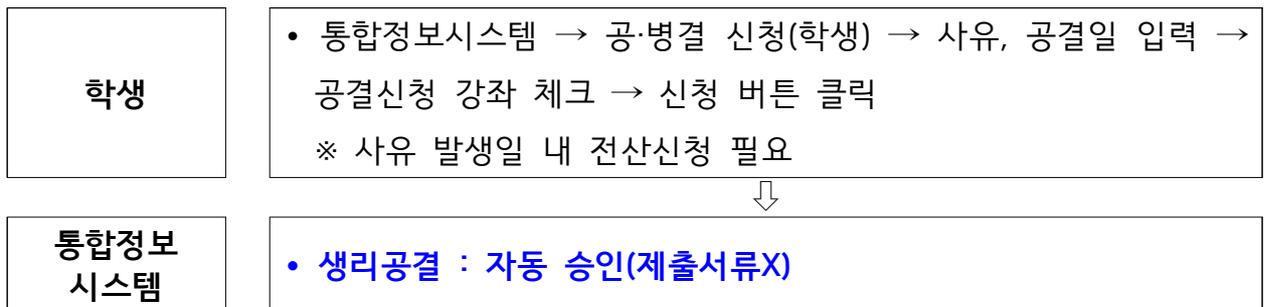
- 공결 : 수업일수 1/2선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가 공결을 합하여 4/5이상 되는 경우
- 병결 : 수업일수 1/5선을 초과할 수 없음

### Ⅲ. 공·병결 신청 절차 : 하단 매뉴얼 참조

#### ■ 공·병결 절차 : 증빙서류 미제출 및 사유 발생 10일 이후 신청할 시 인정 불가



#### ■ 생리공결 절차 : 월 1회 1일적용, 당일신청



### IV. 제출방법

- 공병결 신청서(좌측 상단 학과장님 서명 必) 및 증빙서류 행정실 서면 제출

### V. 공병결 승인

- 1차 행정실 서류 제출 후 최종 승인기간은 1~2주 소요

수강년도 2019 수강학기 2학기 학번/성명

공병결신청 리스트

2 필수입력란

엑셀 총 1건

공병결신청 강좌리스트

엑셀 총 0건

상태	승인구분	신청일자	신청사유	공결일자	반려사유	신청서 출력
신규	신청	2018-09-04				출력

- 공병신체검사
- 갈래
- 통원치료
- 장기입원
- 기타(생리공결)
- 본인결혼
- 예비군
- 기타(학과신청)

본인의 신청사유에 맞게 탭 선택

<input type="checkbox"/>	과목코드	과목명	분반	요일	교시	담당교수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	----	----	----	------

필수입력란 입력 후, 강좌리스트에서 공병결 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 V 체크 (일부 교과목일 경우, 해당 교과목만 체크)

공결기타사유

안내사항

[아래 내용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

1. 신청 시기 및 방법

- 가. 결석사유 발생 직후 1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나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은 월 1회(1일만 적용), 생리공결일자가 전월 기준 20일을 초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신청하여야 한다. 시험기간의 결시는 인정하지 않는다.

2. 공결 및 병결에 대한 출석 처리

- 공결 : 수업일수 1/2선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가 공결을 합하여 4/5이상 되는 경우
- 병결 : 수업일수 1/5선을 초과할 수 없음 (예시 : 3학점 교과목 9시간 초과시 출미 F)

3. 출석 인정

#.인정사유 / 인정기간(공휴일포함) / 증빙서류

수강년도 2019 수강학기 2학기 학번/성명

공·병결신청 리스트

역셀 총 1 건

공·병결신청 상세리스트

역셀 총 0 건

상태	승인구분	신청일자	신청사유	공결일자	반려사유	신청서 출력	과목코드	과목명	분반	요일	교시	담당교수
신규	신청	2018-09-04				출력						

- 공병신체검사
- 장애
- 통원치료
- 장기입원
- 기타(생리공결)
- 본인결혼
- 예비군
- 기타(학과신청)

공결기타사유

안내사항

[아래 내용을 잘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

1. 신청 시기 및 방법  
 가. 결석사유 발생 전후 1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
 나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은 1회(1일만 적용), 생리  
 2. 공결 및 병결에 대한 출석 처리  
 - 병결 : 수업일수 1/2선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가 공  
 - 공결 : 수업일수 1/5선 초과할 수 없음 (예시 : 3학점  
 3. 출석 인정  
 #.인정사유 / 인정기간(공휴일포함) / 증빙서류

공결 · 병결 신 청 서			
학 과		학 번	
학 년		성 명	
일 자	2019년10월28일		
교 시	1교시, 2교시, 6교시, 7교시		
사 유	통원치료		
학칙시행세칙 제 59조에 의거하여 수업기간 중 공결 병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사항 고지			
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			
개인정보 처리목적	개인정보 활용		
공·병결 확인 및 승인 처리	성명, 학과, 학번		
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동의			
민감정보 수집목적	민감정보 활용	보유기간	
공·병결 확인 및 승인 처리	성년월일, 주소, 사망일, 진단명, 입원기간, 진료일, 연학처	3년	
*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·병결 확인 및 승인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
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
2019년 10월 28일			
신 청 인		(인/서명)	
교 무 처 장 귀하			
첨부서류 : 사유별 증명서류 1부			

[제출방법]

1. 개인정보 수집동의 체크v
2. 신청인 본인 서명
3. 좌측 상단 학과장님 서명

공·병결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

시험기간의 결시는 인정하지 않는다.